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○ 제출일자 : 2021. 2. 5.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
O 회부일자 : 2021. 2. 5.

O 상정 및 의결: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1. 2. 22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정경자 경제과장)

가. 근거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나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'전통시장법'이 개정됨에 따라 상인의 정의에 '골목형 상점가'가 삽입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인의 정의에 골목형상점가 삽입(안 제2조제1호)
-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의2호)
- 상인회의 정의에 골목형상점가 삽입(안 제2조제8호)
- O 상인회설립 요건에 골목형상점가 삽입(안 제17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·관리 신설(안 제33조,제34조,제35조)
- O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자구수정(안 제19조, 제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성완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상점가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세분함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